

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7일
성 북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(2025.11.17.~2025.12.1.)
2. 공람장소 :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(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, 8층)
석관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
(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22길 10, 2층)
3. 공람내용 :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
4. 의견제출 :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
5.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
 - (1) 사 업 명 칭 :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(석관동 332-46번지 일원)
 - (2) 구 역 면 적 : 20,561.50㎡
 - (3) 조 합 원 수 : 322명
 - (4) 사업 시행자 : 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(조합장 이금수)
 - (5) 변 경 내 용
 - 『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』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구역확대 등
6.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,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공 랑 의 건 서				
공 고 명 (사업명)	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			
의견제출인	성 명 (개인/단체)		생년월일	
	주 소		전화번호	
의견 내용				
석관1의7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람공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				
			2025년	월 일
제 출 인			(서명 또는 인)	
성북구청장 귀하				